

# NH Bank legal brief

# 은행법 전면개정 논의 동향

# - 금산분리 논의를 중심으로-

2022. 7. 14.

### - 요 약 -

- ▶ 금융위 은행법개정TF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금산분리 이슈는 2가지
  - ① 소유규제 은행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 ② 업무범위 규제 은행의 부수업무로서 비금융업 영위 제한
- ▶ 소유규제에 대해 은행권은 '금융업종 여부 불문하고' 자회사 소유를 허용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은행법개정TF는 우려 표명 및 대안 제시
- ▶ 업무범위 규제에 대해 은행권은 '은행 고유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부수업무로 허용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은행법개정TF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

"빅테크는 하는데 기존 금융사는 못하는 것,

무엇인지 따져 타당하지 않은 규제는 다 풀겠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위와 같은 인터뷰 이후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금융권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리걸브리프에서는 은행과 빅테크의 규제형평성 측면에서 금산분리 규제에 대한 은행법개정TF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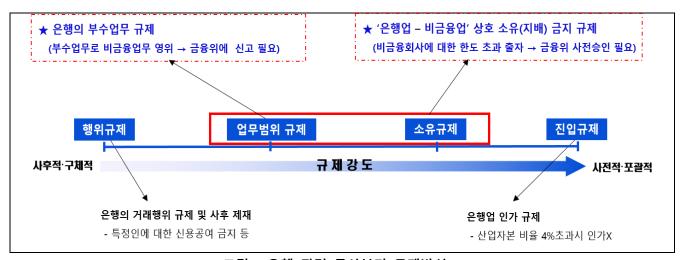
## I.『금산분리』란?

## 1. '금산분리'의 정의 및 취지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각국의 금융당국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방지', '비금융분야의 리스크로부터 금융분야의 안전성 유지' 등의 목적 하에 금산분리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2. 금산분리 규제방식

우리나라의 은행 관련 금산분리 규제는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정 행위를 사후적·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방식(행위규제)부터 진입 자체를 사전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진입규제)에 이르기까지 규제강도에 따라 구분해 보면 아래 <그림1>과 같습니다.



< 그림1. 은행 관련 금산분리 규제방식 >

<u>은행권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후</u> 위 <그림1>의 4가지 규제 유형 중에서도 ①소유규제와 ②업무범위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은행과 비금융업 간의 상호 분리를 유지하던 이 두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후 은행에게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u>아래에서는 위</u>두 가지 규제에 대한 은행법 개정TF 논의 현황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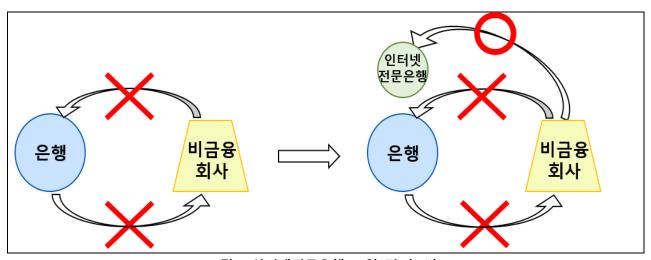
## 田. 소유규제 완화 - 은행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 1. 은행권 건의 배경

## ■ 현 황

우리나라의 은행업과 비금융업 간의 상호 지배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원칙적으로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여 그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은행법 §37). 게다가 은행이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 10%, 정도만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산법 §24).

이와 마찬가지로 <u>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도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u>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은행법 §16조의2).



< 그림2.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전/후 비교>

<u>반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u> 2018년에 제정된「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인터넷전문은행법 §5).



## ■ 문제점

금융당국의 위와 같은 규제 완화 덕분에 빅테크 기업들은 상당한 규제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카오, KT 등 기술기업은 은행업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자체 보유기술을 직접 금융업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은 여전히 기존과 동일한 규제 하에 놓여있습니다. 2019년 9월 금융위가 은행의 자기혁신 및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지만, 이 가이드라인 역시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출자 대상 기업이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위 가이드라인에 의해 투자가 허용되는 사업이 ▲ 해당 핀테크 기업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거나 ▲ 해당 핀테크 기업 전체 매출 및 자산의 75%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 2. 은행법 개정 논의 현황

(은행권 건의) 은행권은 은행의 자기자본 1% 범위 내에서만 출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관련 업종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대한 15% 초과 출자를 허용하여 비금 융업자회사 소유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은행법개정TF 논의) 현재 TF에서는 '금융관련 업종 여부 불문'이라는 은행권의 건의에 대해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의 우려를 표하였고 아래의 대안들이 제시되어 논의 중입니다.

- (제1안) ①금융업의 고도화에 기여하고, ②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하는 회사에 한해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자는 의견
- (제2안) **금융회사와의 업무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은행의 비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자 는 의견



## Ⅲ. 업무범위 규제 완화 -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 1. 은행권 건의 배경

#### ■ 현황

은행법은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의 비금융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은행법 §27의 2①). 다만, 은행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전신고를 받은 금융위는 신고 업무의 부수업무 해당 여부, 신고 업무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조치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금융위는 은행의 부수업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은행 고유업무와의 관련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은행은 고유업무와의 관련성이 애매한 경우 금융당국을 설득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왔습니다. 금융위가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재 유일한 대안은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여 한시적으로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과신한은행도 고유업무와의 관령성 결어로 알뜰폰 사업인 '리브모바일'과 배달앱 '땡겨요'를 각각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출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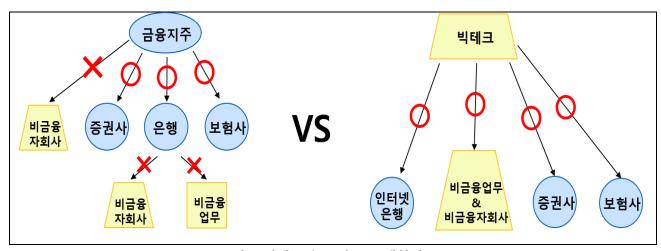
#### ■ 문제점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은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금융위가 이 기준을 엄격하게 고수해 온 데에는 **금산분리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의 부수업무를 넓게 허용하게 되면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비금융업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이는 금융과 비금융을 엄격히 구분하고자 하는 금산분



#### 리 취지에 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 규제를 빅테크와의 규제차별을 더 심화시키는 규제로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u>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는 빅테크 기업은</u>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금융지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u>비금융업 영위를 제한하는 각종 금융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u>입니다. 이와 반대로 은행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하는 것도 비금융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하는 것도 기존 규제로 막혀 있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그림3. 빅테크가 누리는 규제차익 >

#### 2. 은행법 개정 논의 현황

(은행권 건의) 은행권은 인허가 등 진입규제가 별도로 없는 업종에 한하여 은행이 가진 인적, 물적 자산을 활용하여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부수업무로 허용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은행법개정TF 논의) 현재 은행법개정TF는 은행권 건의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선안은 은행권의 요구대로 '은



<u>행</u> 고유업무와의 관련성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자산·수익비중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 입니다. '자산·수익비중 요건'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플랫폼 기반의 강점을 가진 인터넷전문은행이 플랫폼사업을 부수업무로 하여 업무범위를 무한히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함입니다.<sup>1</sup>

'자산·수익비중 요건'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타 법령을 참고하여 어떤 방식으로 규정될지 예측은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신전문 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대출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나 대출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 금융업법」제46조 제2항).

## IV. 대응 방안

금융당국에게는 은행과 빅테크간의 규제형평성 보다 **금융안정성**이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u>《은행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건의》</u>가 은행권의 요구대로 수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관련성', '효율성'과 같은 기준은 그 의미가 모호하여 추후 금융당국의 주관적 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명확한 기준의 도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건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은행권 건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자산·수익비중 요건'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아야

<sup>&</sup>lt;sup>1</sup> 은행법상의 부수업무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 및 은행에 모두 적용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인터넷전문 은행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은행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3조 제1항).



합니다. 또한, 기존에 은행 고유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착수하지 못했던 부수업무나 규제 완화시 신사업으로 계획해볼 만한 부수업무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해 두면 부수업무를 통한 사업 다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무지원국 규제대응지원반

박혜원 반장 노은호 변호사 윤정은 변호사

☼ 02. 2080. 8741
☼ 02. 2080. 8745
☼ 02. 2080. 8739

@nonghyup.com @nonghyup.com @nonghyup.com